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I. 작성방법(Methodology)과 협의 과정(Consultation)

1.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그 첨부 문서, 결정 17/119(A/HRC/DEC/17/119)에 따라 작성되었다. 보고서는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협의 결과를 법무부가 총괄하여 작성하였다.
2. 정부는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위해 2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초 간담회는 보고서 초안 작성 이전에 정부 관계 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및 NGO가 함께 보고서 작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2012년 5월 22일 개최되었다.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제출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90여개 시민사회단체에 참석을 요청하였고,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다. 제2차 간담회는 2012년 6월 18일, 정부가 보고서 초안을 마련한 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되었고, 8개 정부 부처 및 기관, 1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 보고서 초안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부는 간담회와 별도로 전자우편 등을 통한 의견 접수도 병행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한 후 정부 내 협의 과정을 거쳐 2012년 7월 보고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II. 제1차 UPR 심의 이행을 위한 관련 경과

3. 2008년 5월 UPR 제1차 심의를 받은 이후, 정부는 법무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16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주요 권고 사항 등 '제1차 주기 UPR 심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협의회는 수용 입장을 표명한 권고사항의 충실한 이행 및 수용에 이견을 제출한 권고사항을 다룰 필요성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날 국가인

권정책협의회는 모든 정부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한 권고 등을 포함한 제1차 주기 UPR 결과를 반영하여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추가·보완하였다.

4. 2008년 8월 외교통상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동으로 제1차 주기 UPR 을 통해 제시된 권고사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부처, 시민단체 및 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제1차 주기 UPR 평가, 이행방안과 모니터링 체계 등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5. 정부는 2009년 10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제1차 주기 UPR 후속조치 점검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제1차 UPR 권고사항과 관련된 10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구성되었고, 법무부가 제1차 주기 UPR 후속조치 점검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6. 이후 법무부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제1차 주기 UPR 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종합된 자료를 2010년 9월과 2011년 12월,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했다. 2011년 12월에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된 자료는 책자로 제작·배포하고 법무부 (인권국) 웹사이트에 게재·공개되었다.

III. 제1차 UPR 심의 이후 법률·제도의 발전

●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7. 2012년 3월 정부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이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인권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른 NAP이다.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대한 자체평가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7년 5월 이후 국제인권기구의 대한민국에 대한 권고사항,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등을 기초자료로 제2차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법무부를 주관

부처로 하여 27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한 정부 내 협의 과정을 통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하였다.1)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은 시민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 전반에 걸쳐 총 209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책자로 제작되어 국민 일반에 배포되었으며, 매년 법무부가 그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대상 확대 등

8.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파리원칙에 따른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로 법률·제도·정책에 관한 연구, 인권 문제에 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외에 구체적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권한도 보유하고 있다. 종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공·사 모든 부문에 대하여 허용된 반면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행위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각급 학교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인권보호와 증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인권조약 유보 철회

9. 정부는 2008년 10월 아동의 부모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 협약 제9조 제3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고, 이어 2009년 9월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배제를 규정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이는 관련 국내 법률인 「민법」과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10. 한국은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고, 같은 해 공적개발원조의 적정성과 그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공적개발원조의 기본정신에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과 '인도주의 실현'을 포함시켰다. 실

제로 이 법에 따라 수립된 ‘2011-2015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개발협력 중장기 6대 전략목표 및 추진방향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의 기여를 최우선 순위로 명시하고 있고, 원조사업의 수립 및 이행시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 **인신보호법 제정**

11. 2008년 6월부터 「인신보호법」이 시행되었다. 「인신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개인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한 경우²⁾에 스스로 또는 법정대리인 등³⁾을 통해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일반적 구제절차가 마련되었다.⁴⁾

- **정신보건법 일부 개정**

12.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 3월 일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입원 요건이 강화되고, 자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퇴원 의사 확인이 의무화되었으며,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의무가 신설되었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3. 2008년 3월 일부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모집·채용을 포함한 고용관계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에 위반하여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불이행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14. 2009년 2월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되어, 그간 국민으로서 참정권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를 행사하지 못했던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해당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15. 2010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날부터 진행되도록 정지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의무화되었다.
16. 2011년 9월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다시 한 번 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강간죄의 대상이 남자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되었고, 폭행·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⁵⁾ 형사절차에서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무료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인 선임 제도가 도입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발견시 삭제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에는 처벌하도록 하였다.

●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17. 「출입국관리법」 위반 보호 외국인의 장기 보호에 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이는 2010년 1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보호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에 3개월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였다.⁶⁾
18. 한편,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한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관련하여, 2012년 1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12년 7월 시행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

한 사람을 발견하면 이를 지체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었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권리구제절차 이용 가능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전부 개정 및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정

19. 2010년 5월 전부 개정, 2010년 8월 시행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전의 구조금 지급을 위한 요건이었던 가해자의 불명·무자력 요건이 삭제되었고, 장해구조금의 지급 범위가 확대되었다. 더욱이 2010년 8월 개정, 2011년 1월부터 시행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 따라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금은 벌금 수납액, 가해자에 대한 구상금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

20.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동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 및 지방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기관의 범위 등을 명시하였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21.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공적·사적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개인정보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

하여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이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과 각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헌법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개인정보 분쟁의 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되었다. 일정한 경우 개인정보에 관한 소비자단체 등의 단체소송이 도입되었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

22. 2011년 8월 「아동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동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반영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2008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던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전부 개정을 계기로 다시 활성화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아동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심의·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정

23. 2011년 9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사업에 대해 자율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용하였던 것을 제·개정 법령과 주요 계획·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예산 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일반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성평등 취약분야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을 활성화하게 된다.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24. 2012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

된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의 기본이념과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원칙으로 인권보장의무를 명시하고,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강화하며,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인권침해를 그 임원의 해임 사유로 추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전력자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전반에 걸쳐 인권보호가 강화되고,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난민법 제정

25. 2012년 2월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래 「출입국관리법」으로 규율하던 난민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이 마련되었다. 「난민법」 제정은 난민인정절차 및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통해 난민인정절차의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과 난민 등의 처우에 관하여 제기되는 기존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조치

26.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제1차 심의 후 교육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및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구축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지원은 2011년 107만명에게 총 4,734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농어촌지역 학생 급식비도 72만명에게 3,459억원을 지원하여 무료급식을 제공하였다.
 - 장애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장애영아를 위한 무상교육지원, 만 3세이상 장애아동에 대한 유치원교육 지원 및 학령아동의 경우 특수교육 인력 지원, 지원센터 전담 인력 확대·배치,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 및 방과후 학교 운영, 가

정이나 시설에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확대 정책을 펼쳤다.

- 한편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단한 학교중도탈락자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대안교육제도를 정비하고, 교원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운영을 지원하였다.

● 비정규직 대책

27.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주요 사회적 현안으로 등장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차 주기 UPR 심의 이후 아래와 같은 정책을 채택하였다.

- 2011년 9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문제를 다루기 위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이 대책은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또한 강조하였다.
- 2008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종래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 임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들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자인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보험모집인, 자차 기사 등이다. 다만, 이들의 종사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인 보호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종사자 의견수렴 및 노사정간 충분한 검토·논의를 통해 직종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28. 2010년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11년 7월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0시간제가, 2010년 12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게 되었다.

●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29.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 9월, 2009~2018년의 10년간 임대주택(보금자리 주택) 150만호 공급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정책의 근거법으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 3월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며,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하는 아동,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저소득

층의 노후불량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상하수도 설비,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사회보장수준 확대

30.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권자 본인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 완화를 위해 급여 범위를 확대하여 MRI검사,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 등에 급여를 적용하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하였다.
3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생활실태, 가격변화 등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였으며, 2012년 최저생계비 결정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자동 반영하도록 하였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혜택 부여 기준을 완화하여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속하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였다.

●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보장성 강화

32. 전국민 의료보험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점차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신·출산의 지원액, 영유아를 위한 필수예방접종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종목 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었다. 노인층을 위해서는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노인 구강건강 증진 서비스 확대, 만 66세 생애전환기 맞춤형 건강진단 대상 확대 등이 이루어졌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중증화상·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이 경감되었다.
33. 또한 건강증진의 예방적 지원 또한 강화하여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확대실시한 결과, 빈혈유병률이 크게 감소되었다. 한편 인구노령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8년 노인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를 도입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위해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치매환자를 조기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환자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 장애인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

34. 제1차 주기 UPR 심의 이후 장애인의 인권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법률 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 판매를 장려하고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있다.
- 2010년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기초소득을 보장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⁷⁾
- 2011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이외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였다.⁸⁾
- 2011년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하여 보육 지원, 의료비 지원 등 장애아동에 대한 전반적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아동이 사회공동체에 통합되어 자율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35. 장애인의 고용 지원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개편을 실시했다. 직업적 장애의 정의 및 판별 기준을 수립하였고, 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체계도 개편하고, 특정 장애에 적합한 직종 및 직무를 개발하는 등 장애 유형별 고용지원 대책도 마련하였다. 특히 여성장애인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하여 훈련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 단가를 상향 조

정하였다.⁹⁾

IV. 제1차 UPR 심의 후 권고와 관련된 진전 상황

-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 이행 및 홍보(권고 1)

36. 정부는 인권조약기구의 최종견해를 이행하고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부터 최종견해를 포함한 인권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2012년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는 인권조약기구의 권고와 제1차 주기 UPR 권고를 반영하고, 각 영역별로 해당되는 그간의 인권조약기구의 권고와 제1차 주기 UPR 권고의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 권고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정부는 인권협약기구의 견해가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자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학생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권고 6, 9)

37.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공공질서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평화적이고 적법한 방식으로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동 조항은 2010년 6월 30일에 효력을 잃었다.¹⁰⁾

38. 학생의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특별히 보장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법률은 제정된 바 없다. 한편 일부 지방교육청 단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는데,¹¹⁾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모두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장까지 명시한 사례도 있다.

-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권고 25)

3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는 유지되고 있다. 2005년 이후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은 인정되었으나 직급이나 직무의 성질 등을 이유로 한 제한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 사업장 단위당 복수노조가 허용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정부는 단결권에 관한 국내 법·제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동 규약 제22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검토할 예정이다.

●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조사(권고 12)

40.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고문 및 학대 사례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수사·재판 이외에도 법무부 인권침해신고센터,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조사가 가능하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의 폭행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검찰총장에게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경찰관 4명은 구속 기소되었다.¹²⁾

● 고문범죄의 명문화 및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권고 6, 10)

41. 형법에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국내 형법 및 형사 특별법에 의해 범죄로 처벌된다. 현재 형법 개정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속의 자문기구로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 중이고, 이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가혹행위를 처벌하는 대표 규정인 형법 제125조를 고문방지협약 제1조의 고문 정의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4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와 관련해서는 조약 가입에 따른 법률 쟁점에 대한 분석 연구를 수행 중인데 보다 면밀한 검토와 관계 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와는 별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예방기구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방지(권고 13)

43. 정부는 주민등록제도가 국가서비스를 위한 기초적 제도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①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제한, ②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범위 축소, ③ 신원확인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억제, ④ 부정사용 처벌 등을 추진하고 특히 전산 시스템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대가를 받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2011년부터는 공공기관의 서식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44. 2012년 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12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사용 이외의 본인 확인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었다.¹³⁾

● 차별금지법(권고 21, 23)

45. 정부는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등의 차별금지사유를 포괄하는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 제정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 개별법, 국제인권기준, 외국의 입법사례를 연구하는 동시에 일반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며 사적 자치와 평등권 실현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법률 전문가, 이해관계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2011년 국회에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반법 형식의 차별금지법안 2건이 상정되었으나, 2012년 5월 제 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 여성권리증진 정책 및 양성평등적 관점을 정책에 반영(권고 18, 28)

46. 여성권리증진은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목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여성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②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만들기, ③ 사회 주요 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④ 성인지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부위원회 및 공공기관 임원 여성 참여에 관해 국무회의, 여성정책조정회의 등의 의제로 설정·관리하고,¹⁴⁾ 관리자급 여성 공무원의 임용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¹⁵⁾

47. 2011년에는 정부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여,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성인지 예산과 함께 정부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 전반을 파악하고 성평등 목표를 제시하는 국가성평등지표·지수 체계를 구축하여 2010년 국가성평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¹⁶⁾ 이러한 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추진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기초 여건이 마련되었다. 한편 법무부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결혼이주여성, 여성수용자, 여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 관련 범죄 대책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왔다.

● 개정 민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캠페인(권고 31)

48. 2008년 1월부터 호주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 신분등록제도에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새로운 민법과 개인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홍보물을 배포했고, 관계기관과 여성단체가 참여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제도의 시행 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했다. 특히 호주제 폐지 이후 이와 관련하여 정비가 필요한 다른 법령상의 규정들을 발굴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¹⁷⁾

● 부부강간에 대한 처벌 및 가정폭력 법령 강화(권고 14)

49. 「형법」상 강간죄의 대상은 ‘부녀’로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배우자도 여기에 포함되고, 배우자에 대한 강간은 형사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1월 부산지방법원과 2011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남편에 대하여 특수강간죄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들은 최종 확정되었다.¹⁸⁾

50. 가정폭력은 「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 가해자의 환경 조정과 성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¹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2011년 10월부터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긴급입시조치권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도입되었고, 2012년 1월부터는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진 강간 등 성범죄도 가정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되게 되어 이에 해당되는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상담서비스, 보호시설 입주 및 의료지원, 자립자활교육서비스 등의 보호서비스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 출입,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경찰의 초기 대응 강화를 뒷받침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정폭력이 사생활 문제가 아닌 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라는 점에 대한 홍보 노력을 강화하였다.

● 인신매매에 대한 대처(권고 21)

51.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국제공조를 강화해 왔다.²⁰⁾
52.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에 부속된 인신매매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annexed to the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규정된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따른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1년 11월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2012년 5월 제18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동일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다시 제19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위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인신매매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53.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와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서면으로 각각 제공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2012년 2월에는 동법을 다시 개정하여 인신매매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²¹⁾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업무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유관기관과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영업행위를 감독하고 있다.

54. 해외 성매매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검찰 처분결과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함으로써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55.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관련 법률에 따라 내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과 동일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²²⁾ 특히 일정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³⁾

● 아동학대의 처벌 및 형사절차상 아동 권리 보호(권고 14)

56. 아동학대는 「형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아동매매, 아동을 이용한 구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²⁴⁾ 현재 전국 44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7. 형사절차에서 아동의 시각 반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검찰은 ‘아동대상 범죄 수사 전문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 방안은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진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아동의 진술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아동전담검사가 아동 성폭력 등 아동대상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부터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담하고 소아정신과 또는 임상심리학자 등 전문수사자문위원을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2011년부터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회를 의무화하였고, 정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국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였다.

58.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위 16항과 같으며, 법률조력인으로 지정된 변호사에게 아동과 장애아동의 특성, 성폭력 피해의 이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6회 실시하였다.
59. 2012년 6월 현재 정부는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술조력인은 아동·장애인의 심리적, 언어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문가를 뜻한다. 이들은 중립적 지위에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지 않고 충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및 비폭력적 방식의 훈육 촉진(권고 29)

60.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학생지도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벌을 금지하였다. 학칙 개정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학교 내에서 ‘그린마일리지제(학생생활평점제)’를 도입하고,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및 특별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교과외 활동과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61. 가정 내에서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과도한 체벌은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에 해당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가정 내 아동 체벌만을 별도로 규율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이주여성의 권리 보호(권고 15)

62. 대한민국 내 이주자의 대부분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재외동포이

며 그 중 재외동포가 가장 많다. 2012년 현재 체류 외국인은 약 140만 명 수준이다. 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국내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8년 12월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수립하였다. 제1차 계획에는 결혼이민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민자에 대한 보호·지원, 이민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등이 주요 정책 목표로 포함되었다. 제1차 계획이 금년에 종료되게 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 중이다. 제2차 계획은 특히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복지·의료·상담·보육·교육·취업·정보 등) 지원 확대 및 강화, 이민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교육 지원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하여 수립될 예정이다.

63. 정부는 2008년 9월부터 시행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2012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11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일부 개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을 강화하였다.
64. 인신매매성 국제결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5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더불어 한국적응을 위해 결혼이민예정자에 대해 현지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에서의 생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 제공을 위한 다국어 포털 ‘다누리’를 8개 언어로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정보 매거진을 연 4회, 10개 언어로 발간하고 있다. 국제결혼 전의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방법, 관계 법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2009년에는 국제결혼부부로 그 교육대상을 확대하였다.²⁵⁾
65.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에 노출될 경우 연중 무휴 모국어 상담 및 긴급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이주여성상담원이 직접 10개 모국어로 상담하고 경찰,

병원, 이주여성쉼터 등 유관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는데, 이주여성쉼터는 전국 1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없는 권리 보장(권고 3, 8)

66.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차별금지 및 보호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하여, 2009년 10월 법 개정을 통해 부당한 처우·임금체불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67. 2011년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관련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10개 언어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력 상담센터를 개소하였고, 현장 밀착형 상담을 위해 외국인력 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관련 법률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및 사업장 모니터링도 시행하고 있다.
68. 66항과 67항에서 언급한 내용은 여성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히 여성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퇴직금지, 출산 시 산전·후 휴가보장,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등 모성보호제도가 동등하게 보장되고 있으며, 모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정이 있을 경우 출국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을 받거나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될 때에는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참여하여 성희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불법체류 여성이 성매매나 성폭행 등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집행을 유예하고 특별체류를 허가하고 있다.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행 및 난민인정절차 개선(권고 30)

69. 난민 분야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분야 중 하나이다. 2009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난민신청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7일에서 14일로 연장되었고, 난민에 대하여 상호주의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인도적 체류 허가자와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가 규정도 신설되었다.²⁶⁾ 이 법에 근거하여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난민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난민담당인력 증원, 조직 신설 등의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2012년 2월에는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시행될 예정이며, 그 내용은 위 제25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권고 5)

70. 검찰, 경찰, 교정,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공무원 채용 시 교육 및 이후 필수 직무훈련과정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었으며, 인권강사 양성, 인권다큐멘터리 제작, 실무교재 제작이나 직장 내 인권활동 발표 활동워크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 아동 성폭력이나 외국인 단속과정과 같이 인권감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V. 도전과제 및 장애 요인

- 사형제(권고 20, 27)

71. 대한민국은 19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 폐지는 사형을 전제로 구성된 형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범죄자의 생명권 박

탈을 내용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
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
다.²⁷⁾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을 존중하면서, 정부는 법무부장관 자
문위원회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사형제 폐지 및 절대적 중
신형 등 도입 필요성과 함께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형사처벌 규정의 개정 필요성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 국가보안법(권고 4, 24, 33)

72. 정부는 제1차 주기 UPR 심의 이후 현재까지 「국가보안법」을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 우려 없이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²⁸⁾
한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며 그 구성요건
의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판단을 계속 유지
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에서 제시된
해석 기준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
며, 개개의 사안별로 사안의 중대성,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 보안관찰법(권고 5)

73. 보안관찰제도는 현재 필요 최소한으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보
안관찰대상자의 내면의 사상이나 신념이 아닌 동종 범죄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성을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
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재범의 위험성은
법무부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
회가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권고 17, 24)

74.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
는 병력자원의 수급 문제, 병역의 형평성에 관련된 비판적 사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입영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병역법」상 형벌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²⁹⁾ 다만, 정부는 입영 및 징총 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편입에 대해 안보환 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와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며, 이 과제는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었다.³⁰⁾

- 일부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권고 19)

75. 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비친고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성인 여성에 대한 상해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성범죄는 친고죄로 남아 있다.³¹⁾ 성인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여부는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다.

- 미가입 국제인권조약 비준과 유보 철회(권고 2, 7, 16, 22, 26)

76. 제1차 UPR 당시 비준을 권고받은 인권 관련 조약 중, 우리 정부는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서명·비준하였고, 인신매매의정서의 경우 그 비준을 전제로 한 국내법 개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의 경우 국내법과 상충되는 협약 제25조(e)항에 대하여 유보한 채 가입하였는데, 해당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개정이 이루어진 후 유보 철회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77. 강제실종협약의 경우 조약 가입에 따른 법률 쟁점에 대해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 중이다. 한국 내에서는 강제실종이 문제되고 있지는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강제실종의 정의, 형사관할권과 사법공조, 자유박탈자의 관련 기록 수집·보유,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연구 중에 있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사항은 위 42항에 기재한 바와 같다.

78.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그 내용 중 국내 법률과 상충되는 사항이 많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비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향후 국내법과의 관계,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동 협약의 비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79. 정부는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시 자발적 공약 사항 중 하나였던 ILO 핵심협약 비준 검토를 위한 연구와 관계 부처·ILO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제87호, 제98호), 강제근로 관련 협약(제29호, 제105호) 등 협약의 일부 조항이 국내 법령 및 실정에 부합하지 않아 비준에 어려움이 있다. 향후 정부는 ILO와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을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VI. 향후 계획

80.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입후보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미 밝힌 자발적 공약 및 기여를 준수하며, 국제적 인권 준수의 의무를 다하고 국제 공동체의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81. UPR 절차에 대한 협력과 권고 이행을 위한 국내 메커니즘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 내 인권정책에 관한 조정 기능 강화, 시민사회와 협력 등을 통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 1)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2차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공청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각 1회 개최했다.
 - 2) 「인신보호법」은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3)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권자는 피수용자 본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다. 수용시설 종사자는 2010년 6월 「인신보호법」 개정에 따라 구제청구권자의 범위에 추가되었다.
 - 4) 2011년 말까지 인신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566건이었고, 이 중 48건이 인용되었다.
 - 5) 이 법에서 ‘장애 아동·청소년’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 6) 법무부장관의 승인과 관련하여 승인심사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있다. 한편, 보호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심사절차와 별도로 출입국관리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보호일시해제가 승인된 보호외국인은 137명이었다.
 - 7)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9~15만원을 지원한다.
 - 8) 활동보조서비스, 방문간호, 간병서비스 대상자는 2011년 현재 30,000명에서 50,000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9) 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는 1인당 월 374,000~450,000원에서 월 400,000~500,0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 고용은 2010년 7월 15,904명에서 2011년 7월 17,769명으로 11.7%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 10) 현재 2009. 9. 24. 2008헌가25 결정
- 11)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방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광주광역시 교육청이다.
- 12) 2010년 발생한 경찰의 가혹행위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시적으로 2010년 6월부터 3개월간 고문신고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총 15건이 접수되었고 진정 2건은 각각 처리되었으며, 12건에 대해서는 상담이 이루어졌다. 한편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수사기관 등의 고문행위 및 부당한 처우에 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55명, 불법체포 및 감금죄 10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죄 15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33명이 기소되었다.
- 13) 주민등록번호 사용 이외의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대면 확인, 신용카드, 휴대전화 인증, 공인인증서, I-PIN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 14) 특히 정부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 제고를 위하여 2011년 정부 업무 평가 요소에 이를 반영하고, ‘정부위원회 운영 지침’에 여성 비율 40% 달성 노력 의무를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 15) 4급 이상 관리직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008년 말 5.6%에서 2011년 말 8.4%로 증가하였다.
- 16) 보고서에 따르면 0을 불평등, 100을 완전 평등으로 보았을 때 2009년 우리나라 국가성평등지수값은 61.2였으며 성평등수준이 가장 높은 부문은 보건부문, 그 다음은 문화정보부문, 교육·훈련부문, 경제활동부문, 복지부문, 가족부문 순이었고,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은 부문은 의사결정부문이었으며 그 다음은 안전부문이었다.
- 17)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정비 대상 법령으로 총 279개(법률 6개, 시행령 63개, 시행규칙 210개)가 발굴되었다.
- 18) 2009년 1월 16일 부산지방법원은 생리 증임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처를 가스분사기와 과도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남편에 대하여 특수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고(2008고합808), 2011년 9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과도를 들고 더 때릴 듯이 위협하여 처를 간음한 남편에 대하여 특수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1노2052).
- 19) 2008년 이후 가정폭력사범의 처리 및 접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명)

기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가정 보호 사건 송치	기타
			구공판	구약식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기타		
2008년	13,334	13,341	354	1,487	2,593	3,707	249	4,833	118
2009년	12,132	12,154	266	996	2,197	3,745	273	4,579	98
2010년	5,185	5,240	112	465	918	1,654	143	1,908	40
2011년	2,939	2,942	94	435	545	1,365	87	384	32
합계	33,590	33,677	826	3,383	6,253	10,471	752	11,704	288

- 20) 인신매매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2009년 7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아세안+3 초국가범죄고위급회의에 참가하고, 2010년에는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이행검토작업반 회의(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마약범죄사무소 초국가범죄대책 포럼(태국, 방콕), 초국가조직범죄 대응 국가간 법집행 협력회의(캄보디아, 시엠립), 초국가조직범죄협약 당사국회의(오스트리아, 비엔나) 등에 참가하였고, 2011년에는 유엔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오스트리아, 비엔나), 아시아조직범죄국제회의(미국, 라스베이거스), 아태지역 초국가범죄대응 수사공조회의(태국, 방콕) 등에 참가하였다.
- 21)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다음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된다;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결혼 대상자를 모집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18세 미만의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는 행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2명 이상의 외국인을 같은 장소에 기숙(寄宿)시키는 행위
- 22) 성매매피해를 입은 여성은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여성의 경우는 자국 귀국 서비스를 제공한다.
- 23) 법무부는 체류외국인 중 성매매 강요, 상습 폭행이나 학대, 심각한 범죄 피해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해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밟고 있는 자로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타(G-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조치를 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설치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그 피해 외국인을 구체대상자로 결정할 경우에는 특정활동(E-7)자격으로 체류자격의활동허가를 하여, 국내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 24) 2009년 고소·고발 조치건수는 299건(수사건수: 164건, 법원공판 및 판결: 135건), 2010년 고소·고발 조치건수는 290건(수사건수: 130건, 법원공판 및 판결: 160건)이다.

25) 이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2008년 526명, 2009년 2,670명, 2010년 2,742명이다.

26) 난민신청 후 1년 이상이 된 자에 대해 체류자격의 활동허가를 한 사례는 2012년 6월 현재 55건으로서, 현재까지 난민신청인의 취업허가를 불허한 사례는 없다.

27) 현재 2010. 2. 25. 2008헌가23 결정

28) 국가보안법 위반 입건자 및 구속자 수는 다음 표와 같다.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입건	46	57	97	90
구속	16	18	32	19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재판 진행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기소	27	34	43	39	204
유죄 (집행유예)	23 (18)	34 (30)	43 (33)	19 (13)	176 (137)
무죄 (확정)	2 (0)	2 (0)			8 (2)
재판 중 (심급)	2 (1심)			20 (1심)	22

29) 현재 2008헌가22 결정

30) 입영거부자는 2009년 728명, 2010년 721명, 2011년 633명이다.

31) 현재 친고죄로 규정된 성범죄는 「형법」 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위계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등이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일 경우에는 비친고죄이다. 피해자가 성인 여성이라 할지라도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야간의 주거침입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강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성범죄를 범한 때에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